#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17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000000000

피 해 자 ○○중학교 ○학년 ○반 학생들

피 신 청 인 ●●(○○중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적으로 유출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관리 등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2. ○○중학교장에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교직원 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4. 14.(화)

나. 신청인 : □□□□□□□□□

다. 피해자 : ○○중학교 ○학년 ○반 학생들

라. 피신청인 : ●●●(위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마. 구제신청요지

2015. 4. 12. 도내 언론에, ⊠⊠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가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학생의 실태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를침해하는 행위이다.

#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가. 피해자 일부(위 학급 학생 4명)의 주장

- 1) 2015. 3. 9.(월) H·R시간에 피신청인이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바쁘니까 손을 드는 것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는데,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
- 2) 첫 번째는 가정환경(한부모, 조손가정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질문에 어떠한 학생도 손을 들지 않았고, 교실 내분위기는 조용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차 물어보았고, 이에 □□□ 학생이 "선생님 이렇게 손들게하는 것은 인권침해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다.
- 3) 위 □□□ 학생의 발언 이후에, 피신청인은 '신체허약자', '우유 급식지원희망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5~6명의 학생들(정확히 누가 지적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이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 4) '신체허약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피신청인이 특정 학생을 지목하는 식으로 2~3명의 학생에게, "너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지 목된 학생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5) 학생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조사 방식에 대하여 '인권침 해'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피신청인도 손을 들게 하여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였는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조사 할게"라고 말하고 퇴실하였다.
  - 6) 그 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운 학생은

없었고, 이 건과 관련한 신문기사 내용 중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

7) 2015. 4. 14.(화) 피신청인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같은 달. 16.(목) 다시 "사과한다"고 말하였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1)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연수 받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고, 교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연수받는 시간에 복지부, 상담부, 인권부 주재로 인권교육을 몇 차례 받은 바 있다.
- 2) 2015. 3. 9.경 아침조회시간(8:30~8:45)에, ○학년 ○반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 다.
- 3) 당시 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손 들어서 조사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니, 학생들이 명확하게 동의 또는 부동의 한다는 대답은 없었으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아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 을 드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 4) 당시 학생들이 손을 들지 않는 등 협조해 주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당시 교실 내 분위기는 조용했고, 학생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기억한다.
- 5) 한부모가정, 기초생활가정, 원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에 □□□ 학생이 '인권침해'라고 문제제기를 하였고,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 즉시 조사를 중지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게", "더 이상 조사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퇴실하였다.
  - 6) 2015학년도 3월초, 시간적인 문제로 학생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

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급한 마음에 크게 실수를 하였다.

- 7) 사건 당시,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너는 왜 손을 안 드냐?",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하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8) 위 조사로 ◇◇◇ 학생이 창피해서 울었다는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 학급 학생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이 야기를 들었다. 또한, 교무실에서 위 ◇◇◇ 학생에게 직접 물어보았 는데, 역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 9) 2015. 4. 14. 아침조회시간에, ○학년 ○반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서 내가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였고, 같은 달. 16. 아침에 위 학생들에게 다시 사과하였다.

# 4. 인정사실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신청인은 2015. 3. 9. 아침에 위 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학생들의 가정환경(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 유공자자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해당 학생들이 손을 드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위 학급의 □□□ 학생이 "이것은 인권침해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속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다. 학생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자, 피신청인은 특정학생을 지목하여 "너 아니냐?" (해당학생이 아니냐는 의미)고 하였고, 4~5명의 학생들이 다시 이에 대하여 인권침해라고 항의하였다. 결국 피신청인은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당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운 학생은 없었고, 2015. 4. 14.(화) 및 같은 달 16.(목), 피신청인은 학생들에게 당시 조사에 대해 사과하였다.

나. 학생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따돌림을 당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교육목적상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게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 학생들이 손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중학교 ○학년 ○반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낮은 것과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이 수집하고자 하였던 개인정보는, 학생들이 한부모가

족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러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만약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하고 다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때에는 보다 더 각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30.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전준형 (서명)

### [별지] 관련 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유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처리ㆍ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

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 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